

부천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7일 김문호·김은화·김인숙·
김정기·나득수·이진연·한혜경 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 2011년 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 14) 상정
-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1.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인숙 의원)

□ 제안이유

- 시장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국회 통과 이후 대기업들의 기업형슈퍼마켓
(SSM)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 현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유통법
과 상생법 재개정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생존과 지역공동체를 지켜 가
야 한다고 생각함.

- 본 조례안은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생존권 수호를 목적으로,
- 날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 시민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소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전
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유통산업에 대한 시장·시민·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유통산업상생발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조건부과, 등록심의, 재정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SSM이라는 거대공룡이 몰려오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공감하고 동의함. 다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제정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p>	<p>○ 지자체 중에서도 표준 조례안이 통과된 지역이 있는 반면, 강화된 내용으로 지방의회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공포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도 있어, 서로 간에 상충된 의견으로 인해 실제로 같은 조례안이 첨예하게 다투지고 있음.</p>
<p>○ 조례제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서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 의거 미공포 상태에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추가로 SSM이 입점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p>	<p>○ 조례제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표준 조례안이 설사 늦게 제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적어도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조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나 동 내용으로는 SSM 입점을 막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으며, 서민경제를 살리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인데, 표준조례안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내용임.</p>
<p>※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일부 지자체 등 미 공포 사례 지적</p> <p>○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5개안의 부적정 의견이 있어, 부천시의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에 보고하면 다시 수정을 요구할 확률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 집행부 표준안을 통과시켜 추가 입점을 막고 3월에 가서 다시 수정 발의하였으면 하는데?</p>	<p>○ 시 집행부조차도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현재 지역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조례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인근 수원시도 오늘 같은 상임위에서 우리 시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일 내용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사항(관련 시민 의견 청취)

○ 중소기업 중앙회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백원선이사장

① 의원발의 조례안 가결로 SSM 입점 규제를 적극 지지함.

→ 집행부 표준안은 현실적으로 SSM을 막는데 역부족으로 길거리에서 물리적으로라도 입점을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움.

○ 원종고강제일시장 상인회 총무

② 의원발의 조례안 가결로 SSM 입점 규제를 적극 지지함.

→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SSM 입점 규제 요망.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와 제2호 부터 제3호까지의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 등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시장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하에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천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이 지역의 중소형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협의회는 시장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관련부서의 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
5. 전통시장 대표
6.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회의는 연2회 이상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업 및 중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3. 기타 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부천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장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규모 점포 등이 제11조제1항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위치할 경우

2. 대규모 점포 등의 일부가 전통산업보존구역안에 포함되거나 경계에 접하는 경우

3. 부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4. 제5항에 따라 등록심의위원회가 등록거부 결정을 내릴 경우

③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인근 중소유통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이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이 경우 심의위원회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 주거 환경영향 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및 중소기업 관련부서 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4. 중소기업단체가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심의회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